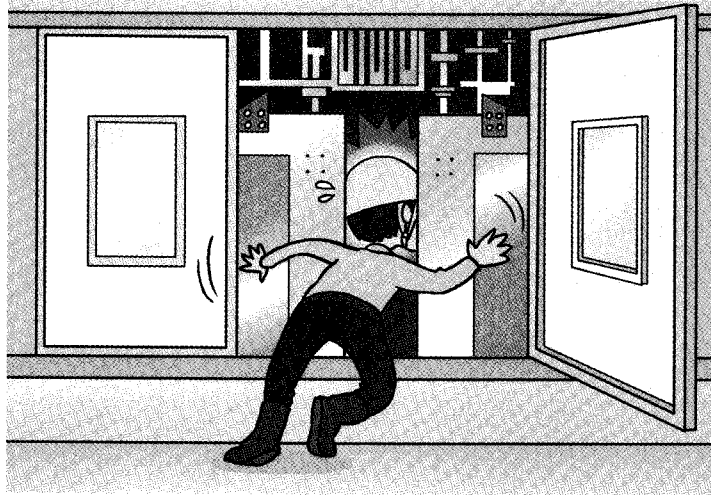


안전순찰과 점검활동



1. 안전순찰

“안전순찰(Safety Patrol)”

순찰이란 원래 군사용어이며, 경찰에서는 경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안전순찰이란 사업장의 전 구역 또는 단위 사업장별로 위험한 시설, 설비, 기계의 물적조건과 위험한 작업방법, 작업행동을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안전목적의 달성을 위한 직장순찰을 말한다.

2.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의 목적

안전점검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패를 파악하고 설비의 불안정한 상태나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발견하거나 안전대책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동 또는 수단이다.

나. 안전점검 순서

재해는 물적인 측면, 작업 측면으로부터 위험의 전조를 나타내고 있는 불안정한 사항이 나쁜 조건과 겹쳐서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점검에서는 현상을 충분히 살펴서 하찮다고 생각되는 이면이나 이상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어떠한 위험이 잠재하고 있나,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로 되는가를 자기의 경험, 지식, 재해사례 등에 의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점검 실시 대상과 점검항목

점검을 실시하는 대상과 점검항목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며,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떠한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파악하여 재해예방에 실효가 있는 점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 안전조직 또는 작업방법에 관한 것

- 안전관리조직 체제, 조직관리의 실태
- 안전활동 계획 및 추진상황
- 안전교육의 계획 및 실시상황
- 안전점검제도, 실시상황

▶ 설비에 관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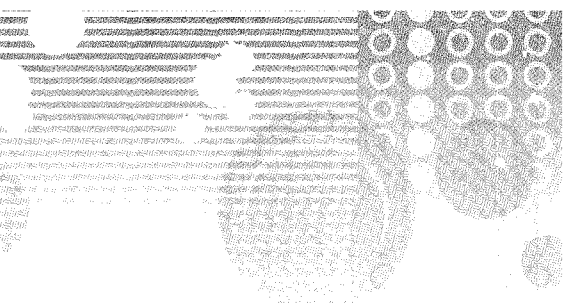
- 작업환경(온도, 습도, 환기 등의 일반환경, 유해위험 환경의 관리)
- 안전장치 법규외의 적합성, 성능유지·관리
- 보호구(종류, 수량, 성능관리)
- 정리, 정돈, 표준화, 실시상황
- 운반설비(표준화, 성능과 취급관리, 표시)

라. 점검방법

점검방법은 오감에 준하는 것이 주체가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측정용 실시한다.

마. 점검범위(Inspection Limit)

작업현장의 기계, 장치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 이상의 유무를 어떠한 기



계, 장치 또는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점검할 것인가 그 중요성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중요성에 따른 범위는 하중이 걸리는 방법, 강도, 빈도, 작용 등을 검토하고, 또 손상의 상태에 따라서 정한다.

바. 점검시기(Inspection Period)

기계 장치 각 부분의 상태가 정상적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점검의 시간적인 간격을 말한다. 사용 중에 변화가 심한 곳이나 중요성이 높은 곳은 점검의 시간적 간격을 짧게 한다.

사. 점검자(Inspector)

기계 장치에 대하여 각 부분의 상태가 정격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등의 판정을 내리는 사람을 말한다. 재해를 예방하려면 그 기계장치의 사용 개시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또 사용 중에도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아. 점검표(Check List)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 점검개소의 누락을 방지하고, 점검결과의 판정에 정확을 기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통계화하기 위하여 점검표가 활용된다.

3.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은 점검의 주기, 점검자, 혹은 Group, 점검대상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되지만 문제는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으며, 효과를 올리려면 각종 형태의 혼합에 의한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점검주기에 의한 구분

점검주기에 의한 구분은 점검대상의 중요도, 점검내용의 특성에 의해서 사업장마다 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정기점검, 임시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정기점검(계획점검)

매주 또는 매월 1회씩 담당 분야별로 당해 분야의 작업책임자가 기계설비의 안전상 중요부분의 피로, 마모, 손상, 부식 등 장치의 변화유무를 점검한다.

▶ 임시점검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점검 기일이전에 임시로 실시하는 점검의 형태로서 유사 기계 설비의 갑작스런 이상 등이 발생되었을 때 실시

▶ 수시점검(일상점검)

관리감독자(직, 조, 반장)가 맡고 있는 공정의 설비, 기계, 공구 등을 매일 일의 시작이나 종료 시 또는 작업 중에 계속해서 시설과 사람의 작업동작에 대해서 점검한다.

▶ 특별점검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신선했거나 변경 내지는 고장, 수리 등을 할 경우에 행하는 부정기 특별점검을 말하며, 천재지변의 발생 후 점검도 이에 해당된다.

나. 점검방법에 의한 구분

▶ 외관점검

기기의 적정한 배치, 설치상태, 변형, 균열, 손상, 부식, 볼트 여유 등의 유무를 외관에서 시각 및 촉각 등에 의해 조사하고, 점검기준에 의해 양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기능점검

간단한 조작을 행하여 대상기기의 기능의 양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작동점검

장치나 누전차단장치 등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 작동시켜 상황의 양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종합점검

정해진 점검기준에 의해 측정, 검사를 행하고 또 일정한 조건하에서 운전 시험을 행하여 그 기계설비의 종합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 관련 법령에 의한 점검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에 의하면 종전 사용단계에서 실시하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앞으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상은 법정 검사주기를 준수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